

NEW 중소기업 범위 간단하다 쉽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NEW

# 중소기업 범위

## 간단하다 쉽다

중소기업 범위  
간단하다 쉽다



NEW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 범위

간단하다 쉽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간단하다 쉽다**

# CONTENTS



##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

2015 중소기업 범위 개편 주요내용	04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06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08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10
자산총액 산정 기준	12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14
중소기업 졸업 유예대상 확대	16
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부여	18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유지	2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횟수	22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부여 제외 규정	24
관계기업의 주업종 적용기준	26
중소기업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 기준	28
관계기업 적용 대상	30
관계기업 산정 기준	32
관계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34



# 중소기업 범위, 뭐가 어떻게 바뀌었지?



## KEY POINT

### 중소기업 범위 이렇게 바뀝니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간단하고, 쉽게 바뀝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했습니다.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해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대상 확대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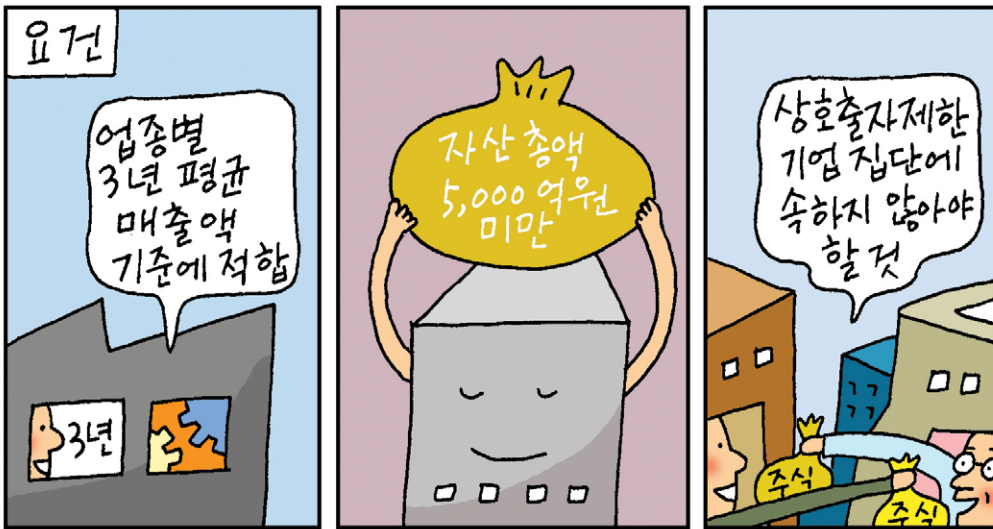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 관계기업 산정 기준

합병·분할,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합병·분할, 폐업)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합니다.

## 궁금해요~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 적용 대상과 요건이 궁금해요

중소기업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용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 (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 쉽다 쉬워~ 3년 매출액 합해서 3으로 나누면 OK!



### 3년 평균 매출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 2015년 3년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015년도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2014년, 2013년, 2012년도 매출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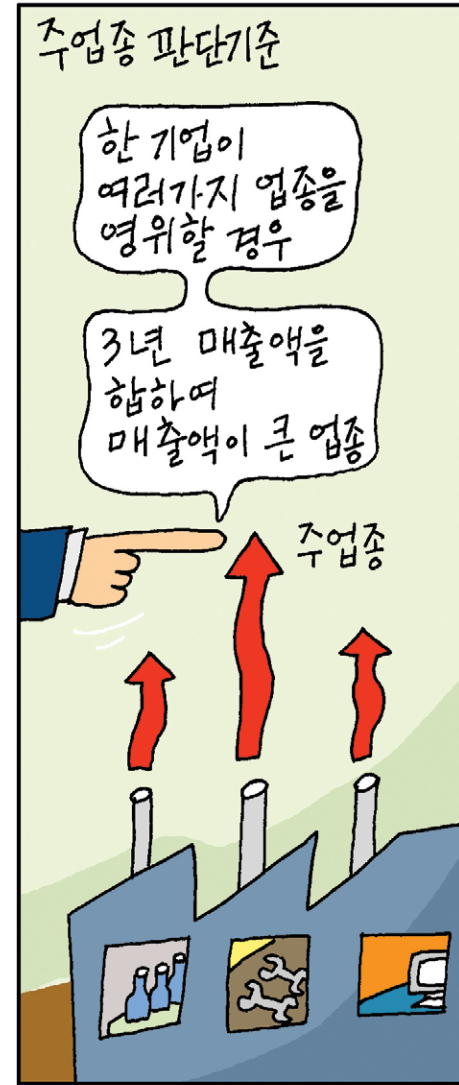


##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 달라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 1,500억원**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펄프·종이 등)
- 1,000억원**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등)
- 800억원**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등),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등
- 600억원**  
5개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400억원**  
4개 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



**주업종 판단기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업종을 영위할 경우  
3년 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및 주업종 판단기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평균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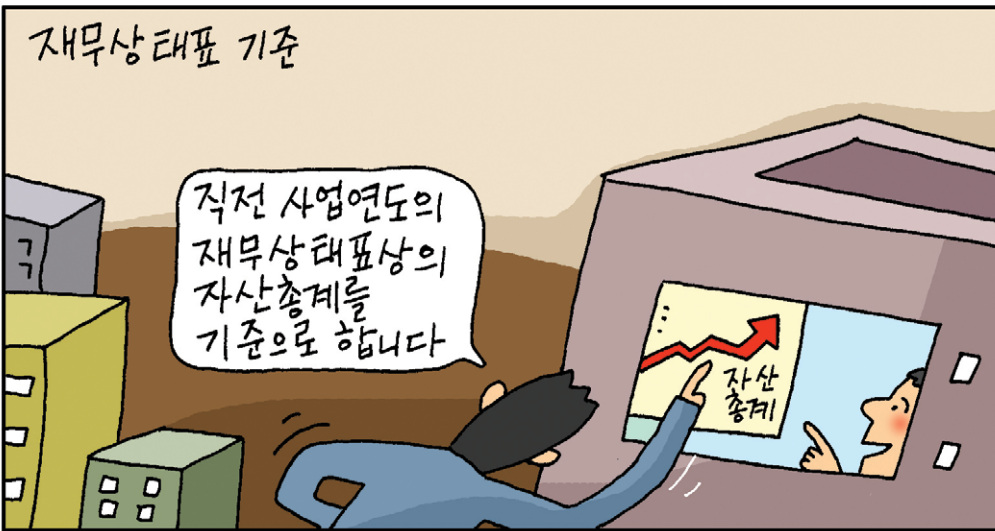
- 1,500억원**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1,000억원**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 800억원**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정보서비스업
- 600억원**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400억원**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주업종 판단기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3년 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중소기업 양태요~



### 자산총액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총액 5,000억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 재무상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창업·합병·분할일 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은 창업·합병·분할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의 모법인이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자산총액으로 적용합니다.

# 앗! 직원이 천명 이상~ 그래도 중소기업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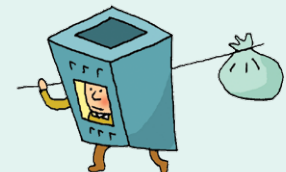


근로자 수,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상한기준을 없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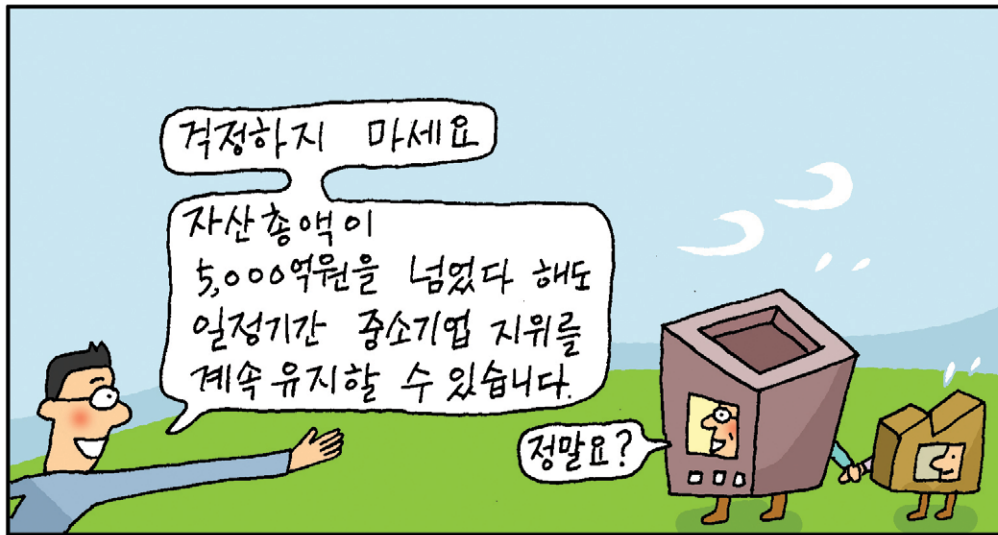
상시 근로자 수나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졸업해야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은 폐지.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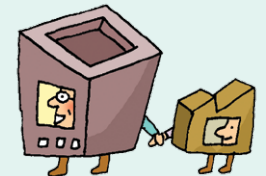


## SOS! 합병했더니 범위 벗어났어요~ 3년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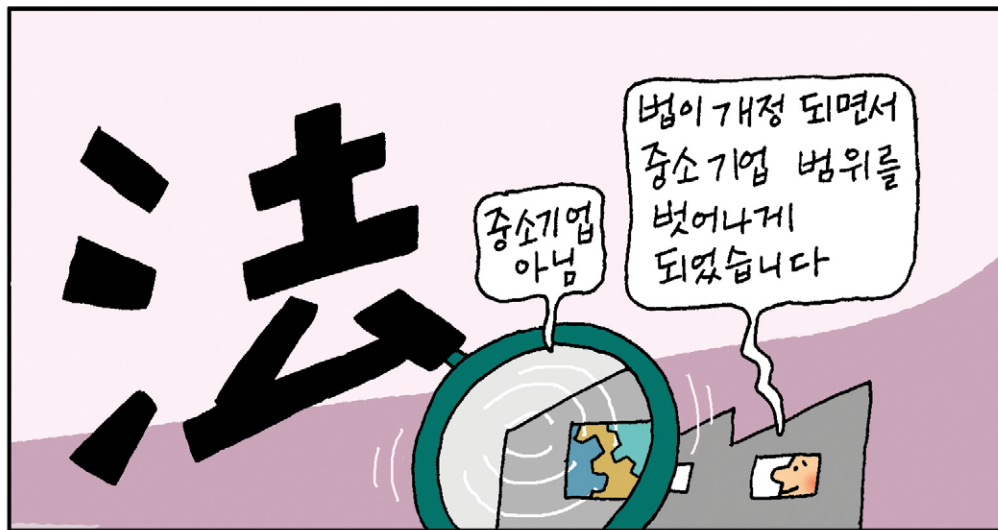
자산총액 5천억원을 넘으면 바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나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규모 확대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고 해도 일정기간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2014년 사업연도 결산 후, 관계기업 적용으로 3년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도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 어떻게 하죠~ 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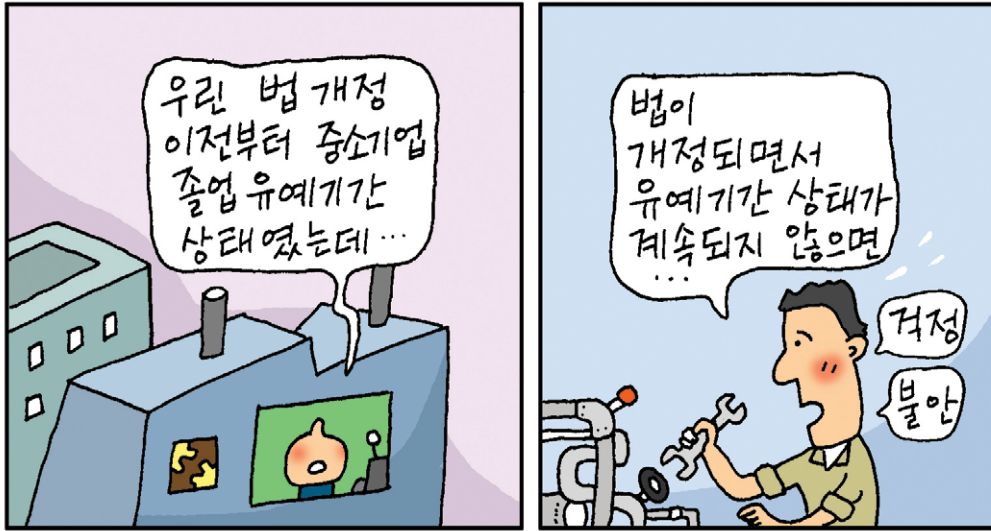


##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됐다면 3년간 연장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서부터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됐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2018년 3월 31일까지)을 부여합니다.

## 남은 유예기간, 2015년에도 혜택은 쭉우욱~~



### 유예 중이었던 중소기업 법 개정 후에도 혜택 그대로

법 개정 이전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상태였다구요? 법이 개정되면서 혹시라도 유예기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봐 걱정이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시행시기인 2015년에도 남아있는 유예기간까지 혜택이 지속됩니다.

#### 남은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

유예기간 중인 경우 유예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남은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리! 유예기간은 한 번만 하으리~



### 무한반복 No~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부여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을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3년은 최초 1회만 부여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  
 지금까지는 졸업 유예기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합니다.

## 유예기간은 아무나 주나~ 이런 기업 안돼요



 **KEY POINT**

###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모든 기업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부여 제외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달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 알쏭달쏭? 매출액이 큰 기업의 업종이 주업종!



 **KEY POINT**

### 업종이 서로 다른 관계기업 주업종 적용기준은?

관계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하고 있을 경우 관계기업의 주업종 판단은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적용합니다.

#### 매출액 규모에 따른 관계기업의 주업종 판단

관계기업인 A기업은 도·소매업을, B기업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평균 매출액 규모가 B기업보다 A기업이 크다면 A기업의 업종인 도·소매업이 관계기업의 주업종이 됩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지배·종속관계가 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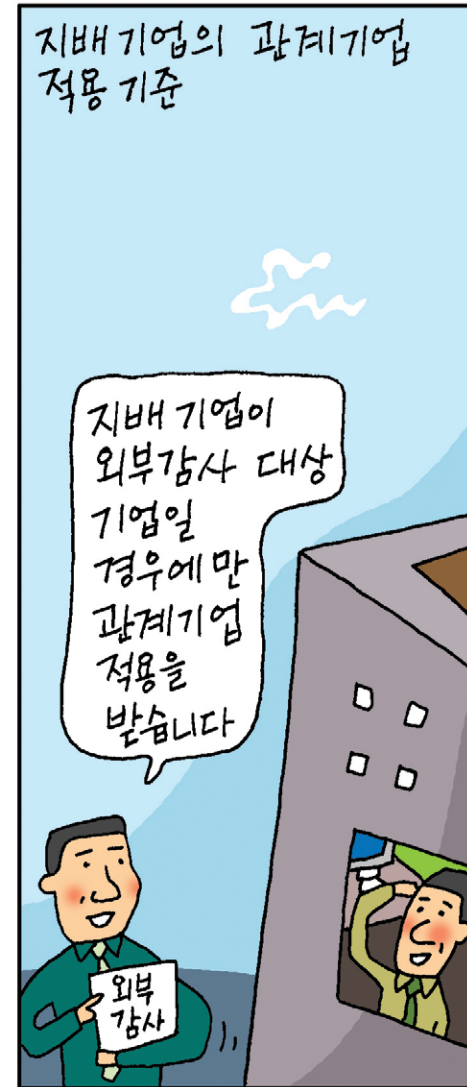
### 지배·종속관계 지분비율과 판단시점이 궁금합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배·종속관계로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 지배·종속관계 기준과 판단시점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면 지배·종속의 관계입니다.
-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주식 소유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30% 이상 소유했다고 모두 관계기업? 천만에요



### 외부감사대상기업일 경우에만 관계기업으로 적용합니다

지배·종속관계로 규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관계기업으로 적용받을까요? 아닙니다. 지배·종속관계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관계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적용 기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가 되었다면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일 경우에만 관계기업 적용을 받습니다.

## 전년 자료 없어도 걱정 뚝!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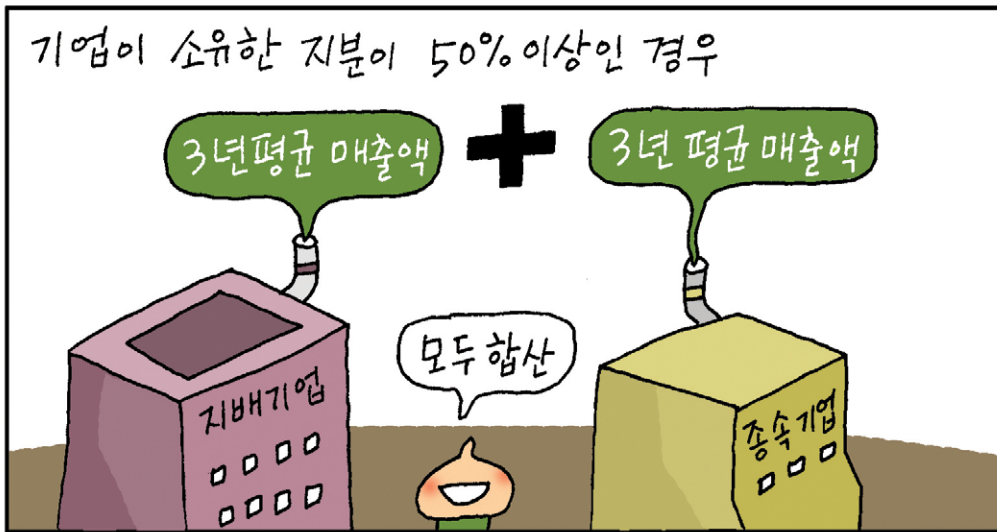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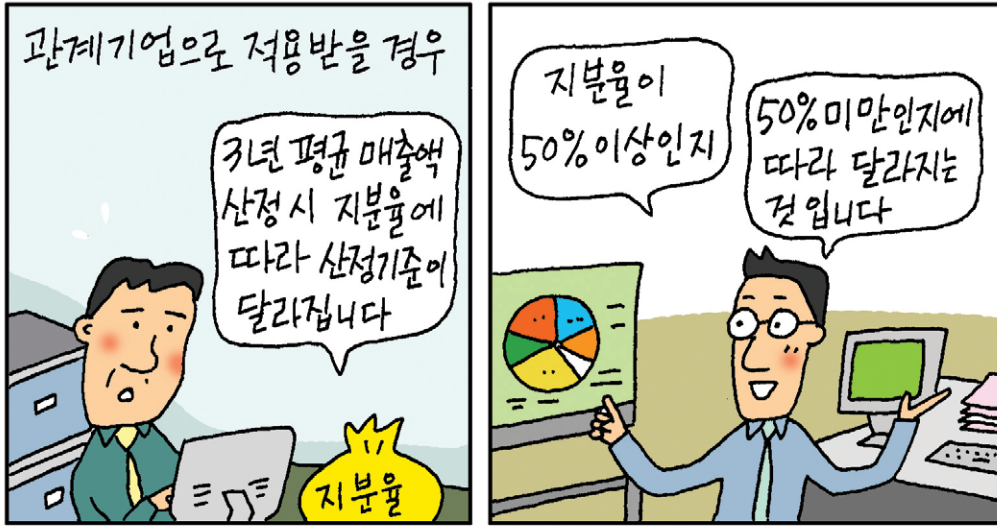
### 관계기업 산정은 창업·합병·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이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관계기업으로 적용받을 경우 시기적으로 전년도 자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까요?

#### 관계기업 산정 기준

창업·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창업·합병·분할 등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합니다.

## 지분만큼 합산? 모두 합산? 지분율에 달렸다!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3년 평균 매출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관계기업으로 적용받을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시 지분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분율이 50% 이상인지, 50% 미만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기업 적용시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기업이 소유한 지분이 50% 이상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며, 50% 미만일 경우에는 지분율 만큼만 매출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발행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3957  
**발행일** 2014년 8월  
**기획** 유동준·김종길·최명선  
**삽화** 시병권  
**집필·총괄** 김미경  
**디자인·인쇄** 디자인 여백(02-2279-9631)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